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421
----------	-----

제출년월일 : 2025. .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평창군의 긴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고향사랑기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적립된 기부금으로 2025년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체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여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평창군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라. 식품진흥기금

2024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 성 액①	2025년 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입 ②	지출 ③		
합 계(8개 기금)	25,475,167	4,210,157	11,984,264	17,701,060	△7,774,1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8,829	2,502	0	81,331	2,50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531,048	262,437	8,000,000	3,793,485	△7,737,563
자활기금	515,008	15,805	28,000	502,813	△12,195
고향사랑기금	889,654	302,000	55,000	1,136,654	247,000
체육진흥기금	2,233,943	552,000	979,000	1,806,943	△427,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18,824	29,420	0	248,244	29,420
재난관리기금	1,182,228	529,278	650,000	1,061,506	△120,722
식품진흥기금	113,899	33,608	33,296	114,211	312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8,711,734	2,483,107	2,238,968	8,955,873	244,139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